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이성운
양부남 · 안도걸 · 조인철
김우영 · 정준호 · 문정복
최혁진 · 정진욱 · 조계원
박지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제37조를”을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생략) <u><신설></u>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3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u> ③ (생략)	제4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 ③ (현행과 같음)